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5. 5.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4월 26일 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5년 5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2005년 5월 6일

제11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

가. 제안이유

- 현재까지 운용되었던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재해 등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됨으로서
-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 및 재해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조례구성 : 전문 31조, 부칙 3조]

- 구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구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영등포소방서장, 영등포경찰서장 등의 재난과 관련된 자가 된다.(안 제4조)
- 위원회의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안 제8조)
- 관할구역안의 재난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등의 기능을 한다.(안 제16조)
-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통제관반장을 둔다.(안 제17조)
- 구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등에 관한사항, 주민이 정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 및 상담 등을 자문하는 기능을 한다.(안 제20조)
- 안전관리자문단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부의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자문위원은 관련분야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안 제21조)
- 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부칙 안 제2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구성·운영)

○ 추진경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지침시달(2004.10.20)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김찬재)

- 새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의 개념을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이외에 에너지·통신·교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종전 별도로 수립·시행되어 오던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방재계획과 재난관리법 상의 재난관리계획을 통합한 국가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각종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발생의 예방, 구조·복구관리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재난대비의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별재난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법 제11조 제4항, 법 제16조 제3항, 법 제75조 제2항)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2004년 10월 11일 각 자치구로 시달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과 서울시 조례안에 기준한 것이어서 상위법령의 저속이나 기타 입법 형식상 제기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개별조항을 살펴볼 때
 -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11호까지 나열하였는 바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이므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제3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책본부의 실질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므로, 제20조로 “안전대책 관계관회의”, 제21조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제22조로 “인력·물적·장비 등 동원체계 구축”, 제23조로 “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촉”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이에 따라 제20조는 제24조로, 제21조는 제25조로, 제22조는 제26조로 제23조는 제27조로, 제24조는 제28조로, 제25조는 제29조로, 제26조는 제30조로, 제27조는 제31조로, 제28조는 제32조로, 제29조는 제33조로, 제30조는 제34조로, 제31조는 제35조로 조문의 번호 이동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요지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수정
 - 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신설
 - 안 제20조에서 제31조까지를 제24조에서 제35조까지로 조문의 번호이동
-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 안 제20조(안전대책관계관 회의) 신설
 - 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운영 및 안전대책의 수립과 소관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협의,조정,상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회의의 구성원은 당해 재난 및 수습 관련부서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의 책임관 등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안 제21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등) 신설
 - ①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합동으로 년 1회 이상 재난대비
수습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실무반 근무에 따른 사전 교육을 할 수 있다.
 - ③ 본부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④ 본부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을 요청 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본부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훈련수습 기관 또는 근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 안 제22조(인력,물자,장비 등 동원체계구축) 신설
 - ① 본부장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본부장으로부터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 또는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안 제23조(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촉) 신설
 - ① 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본부장은 지역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공보전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모니터 요원 및 공보전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20조에서 제31조까지를 제24조에서 제35조까지로 조문이동
-제20조를 제24조로, 제21조를 제25조로, 제22조를 제26조로, 제23조를
제27조로, 제24조를 제28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제26조를 제30조로,
제27조를 제31조로, 제28조를 제32조로, 제29조를 제33조로, 제30조를
제34조로, 제31조를 제35조로 수정

5. 審査結果：修正案 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 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1호
----------	------------

제출년월일 : 2005.5.6.
제 출 자 : 김영진 위원

1. 수정이유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과 관련 안전대책 관계관회의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인력.물자.장비등 동원체계 구축, 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촉 조항을 추가하여 대책본부의 기능을 보강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수정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나. 안 제20조(안전대책관계관 회의) 신설

①본부장은 대책본부운영 및 안전대책의 수립과 소관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협의.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의 구성원은 당해 재난 및 수습 관련부서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의 책임관 등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 안 제21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등) 신설

①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합동으로 년 1회 이상 재난대비 수습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실무반 근무에 따른 사전 교육을 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을 요청 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훈련수습 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다. 안 제22조(인력·물자·장비 등 동원체계구축) 신설

①본부장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으로부터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 또는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안 제23조(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촉) 신설

①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어른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지역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공보전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모니터 요원 및 공보전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마. 안 제20조에서 제31조까지를 제24조에서 제35조까지로 조문이동

-제20조를 제24조로, 제21조를 제25조로, 제22조를 제26조로, 제23조를 제27조로, 제24조를 제28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제26조를 제30조로, 제27조를 제31조로, 제28조를 제32조로, 제29조를 제33조로, 제30조를 제34조로, 제31조를 제35조로 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안 제20조(안전대책관계관 회의) 신설

- ①본부장은 대책본부운영 및 안전대책의 수립과 소관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협의.조정.상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회의의 구성원은 당해 재난 및 수습 관련부서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의 책임관 등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안 제21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등) 신설

- ①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합동으로 년 1회 이상 재난대비
수습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실무반 근무에 따른 사전 교육을 할 수 있다.
- ③본부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④본부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을 요청 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본부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훈련수습 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안 제22조(인력.물자.장비 등 동원체계구축) 신설

- ①본부장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본부장으로부터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 또는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 제23조(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촉) 신설

- ①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어촌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본부장은 지역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공보전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 ③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모니터 요원 및 공보전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20조를 제24조로

안 제21조를 제25조로

안 제22조를 제26조로

안 제23조를 제27조로

안 제24조를 제28조로

안 제25조를 제29조로

안 제26조를 제30조로

안 제27조를 제31조로

안 제28조를 제32조로

안 제29조를 제33조로

안 제30조를 제34조로

안 제31조를 제35조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안전대책관계관 회의) ①본부장은 대책본부운영 및 안전대책의 수립과 소관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협의.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의 구성원은 당해 재난 및 수습 관련부서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 구조기관의 책임관 중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등) ①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 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합동으로 년 1회 이상 재난대비 수습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실무반 근무에 따른 사전 교육을 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 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을 요청 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훈련 수습기관 또는 공로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인력.물자.장비 등 동원체계구축) ①본부장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으로부터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 또는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정안	수정안
	제23조(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촉) ①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어촌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지역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공보 전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모니터 요원 및 공보전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자문단의 기능)-----	제24조(자문단의 기능)-----
제21조(자문단의 구성)-----	제25조(자문단의 구성)-----
제22조(임기)-----	제26조(임기)-----
제23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27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24조(자문단회의)-----	제28조(자문단회의)-----
제25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제29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제26조(의견청취)-----	제30조(의견청취)-----
제27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31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28조(간사)-----	제32조(간사)-----
제29조(수당 등)-----	제33조(수당 등)-----
제30조(운영규정)-----	제34조(운영규정)-----
제31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가구의구성·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51
----------	-----

제출년월일 : 2005. 4.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현재까지 운용되었던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재해 등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됨으로서
-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 및 재해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조례구성 : 전문 31조, 부칙 3조〕

- 구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구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영등포소방서장, 영등포경찰서장 등의 재난과 관련된 자가 된다.(안 제4조)
- 위원회의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안 제8조)
- 관할구역안의 재난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등의 기능을 한다.(안 제16조)
-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차장·통제관·반장을 둔다.(안 제17조)
- 구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등에 관한사항, 주민이 점점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 및 상담 등을 자문하는 기능을 한다.(안 제20조)
- 안전관리자문단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부의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자문위원은 관련분야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안 제21조)
- 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부칙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구성·운영)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별조도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2005.2.15 ~ 2005.3.3(의견없음)

마. 추진경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지침시달(2004.10.20)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재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6조, 제 7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각목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및 피해를 말한다.
2. "재난관리"라 함은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관리"라 함은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물질 등으로 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한 재난관리 업무를 행하는 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
5. "자연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6.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7. "일반재난"이라 함은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말한다.
8. "위원회"라 함은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협의·조정 그밖에 이 조례가 정하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9.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위원회의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10. "대책본부"라 함은 영등포구 구역 안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11. “자문단”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안전관리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전의 심의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영등포소방서장
 2. 영등포경찰서장·노량진경찰서장·구로경찰서장
 3. 제7688부대 1대대장
 4.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교육장
 5. 영등포구 재난관련업무 담당 국장 및 보건소장
 6. 영등포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의 기관의 장
 - 가. 영등포역장
 - 나. 한국전력공사 영등포지점장
 - 다. KT영등포지점장
 - 라. 한국전기안전공사 영등포지사장
 - 마. 서울도시가스(주) 대표이사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회의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지식의 활용)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는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간사) ①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5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

제16조(대책본부 기능) 법 제16조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관할구역안의 재난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3. 제1호 내지 제2호외에 관할구역안의 재난예방·재난응급대책·재난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대책본부에는 다음과 같이 본부장과 차장·통제관·반장을 둔다.

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구청장(이하 "차장"이라 한다)이 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각 실무반의 반장을 자휘 감독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4. 반장은 반별 주무과장이 된다.

②대책본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실무반을 둔다.

③실무반 근무자는 당해 재난수습과 관련이 있는 부서 및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④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대책본부의 운영)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운영되며 당해 재난유형에 따라 통제관 및 반장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제19조(대책본부 설치장소) ①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기획상황실에 설치하되 필요할 경우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사고시 현장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재난수습과 관련이 있는 부서 및 기관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현장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안전관리자문단

제20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공작물 및 대형공사장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21조(자문단의 구성) ①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한 관련전문가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재난관리담당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23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자문단회의) ①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전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①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29조(수당 등)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폐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직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